질문·서면 답변서

질문의원	신 교 선 위 원	답 변	평창군수(임업경영과장)
회의	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98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1998. 12. 8. 호)		

【질문요지】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시 제한 할 수 있는 규정과 봉평면 무이리 산170번지의 기간연장사유 및 훼손 방치지에 대한 향후대책

【답변내용】

○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 신청시 제한규정

-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것은 없으며
- 허가기간연장 신청시 현지 불법사항 발생유무와 연기신청사유 검토하여 연기가부 결정함.

○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 관계규정

-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제1항)
- 시행규칙제89조

제1항 시장,군수,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7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88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만료 10일전에 시장,군수,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군수,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때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한다.

○ 봉평면 무이리 산170번지일원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사유

- 공사지연
- 국내경기 침체로 사업비 악화

○ 훼손 방치지 복구대책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지 일제 점검하여 토사유출우려지등 장기 훼손 방치지에 대하여 복구명령하고,
- 불이행시는 예치된 복구비 인출하여 대집행 복구할것임.